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발 의 자 : 박영웅 의원외 7인

□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7년 12월 3일
-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4일

□ 제안 이유

-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 (안 제2조)
- 나.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예우시책 (안 제4조)
- 다. 재향군인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(안 제5조)

## □ 검토 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써
-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